

의안번호	제 521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6년 11월 22일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재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1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22일

발 의 자 : 엄재창 · 황규철 · 이의영 · 김인수 ·
임병운 · 임희무 · 박우양 의원(7인)

1. 제안 이유

- 기존 조례에 명시된 각종 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명칭
변경(안 제9조)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권 취소) ① 도지사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농산물품질관리법</u>」, 「<u>친환경농업육성법</u>」, 「<u>산업표준화법</u>」, 「<u>축산물가공처리법</u>」 등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p>	<p>제9조(사용권 취소) ①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농수산물품질관리법</u>」, 「<u>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 「<u>산업표준화법</u>」, 「<u>축산물 위생관리법</u>」 등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p>

관계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